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366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366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5297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곽병철, 황건수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재우, 이주웅, 박창환

변론 종결 2021. 7. 8.

판결 선고 2021. 8.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52976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9,648,2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3쪽 4행 및 6행의 "G"을 "M"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9행의 "기간 동안"과 "피고의" 사이에 "자신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이 사건 C 명의 I은행 계좌'라 한다)에서"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4쪽 4행의 "금액이었다." 다음에 "C은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진 기간에 채무초과 상태였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 제4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 한편 피고는 C의 처이다. C은 200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J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를 추가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와 체결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액에 관한 해당 일자별 증여계약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2대출에 관한 C의 연대보증채권자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써 증여금액 합계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C의 K, L에 대한 차용금 이자 변제, C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부양료, 가사노동의 대가 등의 명목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은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때 위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파산자 A의 C에 대한 이 사건 제1, 2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은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이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이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고 그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 성립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아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와 C은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진 기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

② C은 2000년 이전부터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A에 대하여 근보증한도 78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이 사건 제1, 2대출채무의 변제기 도래 후인 2013. 10.부터 비로소 매월 급여를 이 사건 C 명의 I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받아, 피고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H은행 계좌'라 한다)로 급여액을 조금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다. C은 2013. 9. 이전까지 J의 급여를 위와 같은 금융거래방식을 통해 지급받아 피고에게 송금하지는 않았다.

③ 이 사건 C 명의 I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명의 H은행 계좌로 이루어진 별지 제2목록 순번 1, 2, 4, 5, 7 내지 16 기재 각 송금은, 2013. 10.부터 시작된 위 금융거래방식에 따라 C이 2014. 5.부터 2015. 7.까지 지급예정일인 매월 20일 무렵 또는 J의 사정에 따라 지급예정일이 지난 후 J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피고에게 한 송금이다.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C은 2014. 5. 21. 4월 급여 13,741,100원을 지급받은 후 2014. 6. 9.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제2목록 순번 1 기재 송금).

㉠ C은 2014. 6. 23. 5월 급여 14,532,95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제2목록 순번 2 기재 송금).

㉡ C은 2014. 8. 12. 6월 급여 14,532,95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제2목록 순번 4 기재 송금).

㉢ C은 2014. 8. 25. 7월 급여 14,532,950원을 지급받은 후 2014. 8. 26.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제2목록 순번 5 기재 송금).

㉣ C은 2014. 10. 1. 8월 급여 14,422,950원을 지급받은 후 2014. 11. 5.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제2목록 순번 8 기재 송금).

㉤ C은 2014. 10. 21. 9월 급여 14,422,95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제2목록 순번 7 기재 송금).

㉥ C은 2014. 11. 25. 10월 급여 14,422,950원을 지급받은 후 2014. 11. 27.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제2목록 순번 9 기재 송금).

㉦ C은 2014. 12. 26. 11월 급여 14,532,950원을 지급받은 후 2014. 12. 29.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제2목록 순번 10 기재 송금).

㉧ C은 2015. 1. 20. 12월 급여 14,202,950원을 지급받은 후 2015. 1. 21.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제2목록 순번 11 기재 송금).

㉨ C은 2015. 2. 17. 1월 급여 14,306,05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제2목록 순번 12 기재 송금).

㉩ C은 2015. 3. 24. 2월 급여 14,306,05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제2목록 순번 13 기재 송금).

㉪ C은 2015. 4. 20. 3월 급여 11,927,060원, 2015. 5. 20. 4월 급여 9,196,180원을 지급받은 후 2015. 5. 20.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제2목록 순번 14 기재 송금).

㉫ C은 2015. 6. 19. 5월 급여 11,533,670원을 지급받은 후 2015. 7. 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제2목록 순번 15 기재 송금).

- ㉠ C은 2015. 7. 21. 6월 급여 13,702,58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별지 제2목록 순번 16 기재 송금).
- ㉡ 별지 제2목록 순번 1, 2, 4, 5, 7 내지 16 기재 각 송금이 이루어진 이 사건 피고 명의 H은행 계좌는 매월 20일 무렵부터 말일 무렵까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서 관리비, 가스비, 통신비, 렌탈료, 카드대금이 자동이체방식으로 지출되는 계좌이다.
- ㉢ 위와 같이 2014. 5.부터 2015. 7.까지 지급된 C의 월 급여 상당액이 별지 제2목록 순번 1, 2, 4, 5, 7 내지 16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고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2014. 5.부터 2015. 7.까지 이 사건 피고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생활비로 지출된 월별 관리비, 가스비, 통신비, 렌탈료, 카드대금의 구체적인 액수 및 합계액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C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피고 명의 H은행 계좌로 매월 상응하는 금액을 주기적으로 보낸 유일한 사람이다.
- ㉣ 한편 별지 제2목록 순번 3 기재 송금은 이 사건 C 명의 I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명의 H은행 계좌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C의 월 급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 ㉤ 피고는 C의 월 급여에 기초한 별지 제2목록 순번 1, 2, 4, 5, 7 내지 16 기재 각 송금액 중 매월 위와 같은 항목으로 지출되는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C의 월 급여와 무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3 기재 송금액을 피고 명의로 가입한 금융상품에 납입하거나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 또는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인출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 ㉥ 한편 별지 제2목록 순번 6 기재 송금은 2014. 10. 20. 이 사건 C 명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I은행 계좌'라 한다)로 C의 월 급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 ㉦ 별지 제2목록 순번 6 기재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C이 연대보증한 이 사건 제1대출채무의 주채무자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2014. 10. 15. 대금 마련을 위해 I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금 입금계좌로서 이 사건 피고 명의 I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는 2014. 10. 20. 위 대출금에다가 별지 제2목록 순번 6 기재와 같이 이 사건 C

명의 I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된 4,000,000원, 이 사건 피고 명의 H은행 계좌로부터 이 사건 피고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한 40,000,000원을 보태어 낙찰받은 부동산의 대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⑩ 그 후부터 이 사건 송금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15. 7. 21.까지 기간 동안 위 대출원리금의 분할상환금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의 월 급여 상당액이 송금된 이 사건 피고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다시 이 사건 피고 명의 I은행 계좌로 수회에 걸쳐 송금된 금액으로 지급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피고와 C 사이에 C의 월 급여에 기초한 별지 제2목록 순번 1, 2, 4, 5, 7 내지 16 기재 각 송금액 중 실제 C의 급여지급일, C의 피고에 대한 송금일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송금의 원천이 된 해당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월에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지출된 관리비, 가스비, 통신비, 렌탈료, 카드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별지 제1목록 같은 순번 기재 각 금액1)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2목록 순번 1, 2, 4, 5, 7 내지 16 기재 각 송금액 중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지출된 위 항목 금액합계액까지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2목록 순번 3, 6 기재 각 금액(별지 제1목록 같은 순번 기재 금액)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C의 K, L에 대한 차용금 이자 변제, C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부양료, 가사노동의 대가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이 위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와 C은 원고 주장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액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C이 피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소결론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인 179,648,2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액을 송금받을 당시 C이 A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을 알지 못하였고 생활비 등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A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구회근

판사박성윤

판사이의영

별지

1) 예를 들어 별지 제2목록 순번 1 기재 송금액 14,000,000원의 경우, C의 피고에 대한 송금일은 2014. 6. 9.이지만 위 송금액의 원천이 2014. 5.에 지급되어야 할 C의 급여이므로, 위 송금액에서 2014. 5. 지출된 생활비 2,573,063원을 제외한 나머지 11,426,940원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